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운영 내규

1. 입학전형

본교 대학원 입학전형 학칙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학과 내규로 정한다.

1.1 (일반전형)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서류심사는 ①대학 및 대학원 성적, ②학업 및 연구계획서(학과 소정양식)로 한다. 구술시험은 ①전공에 대한 지식, ②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으로 시행한다.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 한다.

1.2 (특별전형) 특별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되, 특별전형의 특성상 ①경력증명서, ②추천서(학과 소정양식)의 제출을 추가한다.

1.3 (편입학전형) 편입학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한다.

2. 종합시험

제1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시험과목)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과목을 필수로 한다. 박사학위 과정은 위 과목 이외에 두 과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을 본다.

제4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경제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경제학과 전임교수 또는 소속학과의 재직교원

(강사)로 선정한다.

제6조(문제 유형 및 배점) 문제는 서술형(논술형, 설명형, 사례형 등)으로 출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7조(합격점수)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 점수는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학기 첫째 주에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학기중에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다.

제9조(시험결과 통지) 학과장은 종합시험 성적을 시험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응시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보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